

밤 고개로 확장공사

2구간 SH공사(세곡2지구 경계부) 협약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밤고개로확장공사 구간 내 세곡2지구 경계부 L=600.0M 확장공사(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본 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시행하는 "본 사업"의 범위는 밤고개로확장공사 구간 내 세곡2지구 경계부 L=600.0M 확장공사로써, 구체적인 위치 및 범위는 부록 1에(도면) 기재된 바와 같다.

- 연장 L=600m , 6차로 → 8차로 확장

제 3 조 (사업기간)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본 협약"의 이행기간(이하 "사업기간"이라 한다)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수탁자가 "본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 4 조 (사업시행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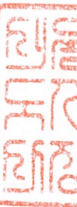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1. 위탁자의 책임 및 범위

- 가. "본 사업"의 사업비 부담(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설비, 폐기물처리비 등).
- 나. "본 사업" 관련 택지개발로 발생한 민원처리

4.2. 수탁자의 책임 및 범위

-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검토, 시공, 감독 업무
- 나. "본 사업" 사업비 관리 및 감독



다. “본 사업” 착수 후 발생한 각종 민원처리.

(택지개발로 발생한 민원 제외)

라. 공사시행시 제반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시 관련서류 제출 및 인수인계

제 5 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① 수탁자는 “본 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계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기 설치된 시설물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없도록 추진하고 불가피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사업비 산정)

- ① “본 사업”의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설비, 폐기물처리비 등)는 수탁자가 완료한 실시설계 내역서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제7조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총 5,300백만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③ 사업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인허가 등 제세공과금 및 지중지장물 이설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7 조 (사업비의 변경)

- ① 실시설계 이후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6조(사업비 산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은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조정 일정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8 조 (사업비의 정산)

- ① 수탁자는 “본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소요된 사업비의 정산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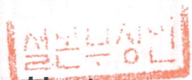
- ② 제1항의 정산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위탁자의 확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정산결과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비는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9 조 (사업비의 지급 절차 및 관리)

-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거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기한을 정하여 위탁자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요청한 기한 내에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도시 기반시설본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위탁자 소유의 금액으로 정산시 위탁자에게 인계하거나 사업비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 10 조 (부지의 확보)

밤고개로의 세곡2지구계내에 있는 도로부지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부지내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설 및 제거는 수탁자가 처리하고 소요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타 계획과의 협조)

- ① 수탁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위탁자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한전, 통신 등 지중화계획에 따른 비용 부담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12 조 (민원 및 민·형사상의 책임)

“본 협약”에 의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 13 조 (인수인계)

- ① 수탁자는 “본 사업” 완공 후 위탁자에게 준공도서 1식을 인수인계한다.
- ② 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는 위탁자가 주관하여 처리하고 수탁자는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 14 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제 15 조 (본 협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약)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시행에 따라 추가 협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본 협약을 근간으로 추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6 조 (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의견이 있거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업에 대한 세부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및 재협의를)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간의 상호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 18 조 (사업비 납부방법)

사업비는 본 협약 체결 후 수탁자가 납부를 요청하여 위탁자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내 전액 납부한다.

2017. 08. .

위탁자 :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인)

수탁자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

